

# 瑞山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1. 提出者：瑞 山 市 長

2. 提出日字：1998. 8. 20

3. 提案理由

- 1997.9.9 대통령령 제15476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임.

4. 主要骨子

- 가. 법령 개정에 의하여 삭제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안 제7조).
- 나. 조정 공사비의 예탁 방법을 다양화하여 조정 공사비의 예탁을 용이하게 함(안 제26조).
- 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도로폭 6m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를 1천 $m^2$  이상에서 2천 $m^2$  이상으로 조정(안 제27조).

- 라.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가장 낮은 층수로 하여 법적용의 합리성 도모 (안 제71조).

## 5. 參考事項

### 가. 입법예고

- 예고방법 : 서산시공보 게재공고
- 예고기간 : '98.5.10 ~ 6. 5(20일간)
- 공고번호 : 서산시공고 제115호

### 나. 관련 근거법령

- 건축법 : 제4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 제52조
- 건축법시행령 : 제5조, 제27조, 제28조, 제65조, 제82조

## 6. 檢討意見

-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동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 '98.6.5 서산시공고 제115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거친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령의 부분적인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 절차를 간소화 하는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성안된 것으로 사료됨.

#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변안동의안

의안 번호	산업위 1
----------	-------

발의일자 : 1998. 8. 27.

발 의 자 : 임덕재위원회6인

## 1. 변안동의 이유

제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98.8.26)에서 의결된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일부내용에 착오가 발견되어 이의 수정을 위해 변안코자 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변안함.

- 붙임 :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변안동의안

##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제6항중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별표6과 같다“로 한다.  
제13조 제2항중 “별표6”을 “별표7”로 하고, 제15조 제1항중  
“별표7”을 “별표8”로, 동조동항2호중 “별표8”을 “별표9”로,  
동조동항3호중 “별표9”를 “별표10”으로, 동조제2항중 “별표10”을  
“별표11”로 하며, 제19조 제1항중 “별표8”을 “별표9”로 한다.

# 표 비 대 문 조 구 · 신

원	정	안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 중의 제작등) ①~⑤(생략) ⑥시장은 -----, 광고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10조(----- -----) ①~⑤(현행과 같음) ⑥시장은 -----, 광고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①(현행과 같음) ②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 --잘알수 있도록 별표6과 -----부착하여야 한다. ③~⑥(현행과 같음) 제15조(----- -----)	제10조(----- -----) ①~⑤(현행과 같음) ⑥시장은 -----, 광고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13조(-----) ①(현행과 같음) ②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 --잘알수 있도록 별표7과 -----부착하여야 한다. ③~⑥(현행과 같음) 제15조(----- -----)
제13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 ①(생략) ②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로 ----- --잘알수 있도록 별표7과 -----부착하여야 한다. ③~⑥(생략) 제15조(생활폐기물수집 · 운반 · 처리 · 수수료의 부과 · 징수)	제13조(-----) ①(현행과 같음) ②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 --잘알수 있도록 별표6과 -----부착하여야 한다. ③~⑥(현행과 같음) 제15조(----- -----)	제13조(-----) ①(현행과 같음) ②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 --잘알수 있도록 별표7과 -----부착하여야 한다. ③~⑥(현행과 같음) 제15조(----- -----)

# 신 · 구조문대비표

원	정	안	변안동의안
<p>① (생략)</p> <p>1. 가정 및 사업장 적용한 별표8의 포함되어야 한다.</p> <p>2. 대형폐기 및 수수료는 별표9와 같다.</p> <p>3.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별표10의 정할 수 있다.</p> <p>② 전용수거용기를 운영주체와 별표11의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1. 가정 및 사업장 적용한 별표7의 포함되어야 한다.</p> <p>2. 대형폐기물 및 수수료는 별표8과 같다.</p> <p>3.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별표9의 정할 수 있다.</p> <p>② 전용수거용기를 운영주체와 별표10의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① (현행과 같음)</p> <p>1. 가정 및 사업장 적용한 별표8의 포함되어야 한다.</p> <p>2. 대형폐기물 및 수수료는 별표9와 같다.</p> <p>3.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별표10의 정할 수 있다.</p> <p>② 전용수거용기를 운영주체와 별표11의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 신 · 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번 안 등 의 안																																
<p>제19조(매립장처리 수수료납부방법등)</p> <p>①다음 각호의 1에-----</p> <p>이용하는 경우 별표9에-----</p> <p>-----남부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③ (생략)</p> <p>[별표 6] 광고수수료(제10조6항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용 량</th> <th>광고료(매당) 비 고</th> </tr> </thead> <tbody> <tr><td>2리터용</td><td>2원</td></tr> <tr><td>5리터용</td><td>4원</td></tr> <tr><td>10리터용</td><td>6원</td></tr> <tr><td>20리터용</td><td>9원</td></tr> <tr><td>30리터용</td><td>12원</td></tr> <tr><td>50리터용</td><td>17원</td></tr> <tr><td>100리터용</td><td>20원</td></tr> </tbody> </table>	용 량	광고료(매당) 비 고	2리터용	2원	5리터용	4원	10리터용	6원	20리터용	9원	30리터용	12원	50리터용	17원	100리터용	20원	<p>제19조(매립장처리 수수료납부방법등)</p> <p>①다음 각호의 1에-----</p> <p>이용하는 경우 별표8에-----</p> <p>-----남부하여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19조(매립장처리 수수료납부방법등)</p> <p>①다음 각호의 1에-----</p> <p>이용하는 경우 별표9에-----</p> <p>-----남부하여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별표 6] 광고수수료(제10조6항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용 량</th> <th>광고료(매당) 비 고</th> </tr> </thead> <tbody> <tr><td>2리터용</td><td>2원</td></tr> <tr><td>5리터용</td><td>4원</td></tr> <tr><td>10리터용</td><td>6원</td></tr> <tr><td>20리터용</td><td>9원</td></tr> <tr><td>30리터용</td><td>12원</td></tr> <tr><td>50리터용</td><td>17원</td></tr> <tr><td>100리터용</td><td>20원</td></tr> </tbody> </table>	용 량	광고료(매당) 비 고	2리터용	2원	5리터용	4원	10리터용	6원	20리터용	9원	30리터용	12원	50리터용	17원	100리터용	20원
용 량	광고료(매당) 비 고																																	
2리터용	2원																																	
5리터용	4원																																	
10리터용	6원																																	
20리터용	9원																																	
30리터용	12원																																	
50리터용	17원																																	
100리터용	20원																																	
용 량	광고료(매당) 비 고																																	
2리터용	2원																																	
5리터용	4원																																	
10리터용	6원																																	
20리터용	9원																																	
30리터용	12원																																	
50리터용	17원																																	
100리터용	20원																																	

# 신 · 구조문대비표

원	안	안	안
원	수	정	번
<u>(별표 7)</u>	<u>(별표 6)</u>	<u>(별표 7)</u>	<u>(별표 7)</u>
<u>(별표 8)</u>	<u>(별표 7)</u>	<u>(별표 8)</u>	<u>(별표 8)</u>
<u>(별표 9)</u>	<u>(별표 8)</u>	<u>(별표 9)</u>	<u>(별표 9)</u>
<u>(별표 10)</u>	<u>(별표 9)</u>	<u>(별표 10)</u>	<u>(별표 10)</u>
<u>(별표 11)</u>	<u>(별표 10)</u>	<u>(별표 11)</u>	<u>(별표 11)</u>